#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(약칭: 농어촌공사법)

[시행 2022, 2, 18.] [법률 제18403호, 2021, 8, 17., 일부개정]



농림축산식품부(농촌정책과-공사 관련) 044-201-1512, 1513 농림축산식품부(농지과-기금 관련) 044-201-1737, 1738 농림축산식품부(농지과-농지은행) 044-201-1732, 1733 농림축산식품부(농지과-농지연금) 044-201-1742. 1734

**제1장 총칙** <개정 2008. 12. 29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 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·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7. 14., 2013. 3. 23., 2015. 1. 20.>

- 1. "농업기반시설"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.
- 2. "공사관리지역"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 받는 지역을 말한다.
- 3. "농지"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.
- 4. "농업인"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5. "농업법인"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.
- 6. "전업농업인(專業農業人)"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.
- 7. "농업기반시설 관리권"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고,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 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.
- 8. "장기채"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,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(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)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.
- 9. "해외농업개발"이란 국외에서 농・축산물을 「해외농업・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 (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### **제2장 한국농어촌공사** <개정 2008. 12. 29.>

**제1절 설립** <개정 2008. 12. 29.>

제3조(설립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4조(법인격)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제5조(사무소 등)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-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,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 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.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- 제5조의2(농지은행관리원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(이하 "관리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1. 영농규모의 적정화, 농지의 효율적 이용,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(이하 "농지은행사업"이라 한다)

- 가. 농지의 매매・임대차・교환・분리・합병에 관한 사업
- 나. 농지의 가격,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
- 다.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
- 라.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
- 마.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
- 2. 「농지법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- 3.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
-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8. 17.]

제6조(자본금 및 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, 전액을 국가가 출자(出資)한다.

-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7조(등기)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8조** 삭제 <2008. 12. 29.>

제9조(대리인의 선임)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## 제2절 사업 <개정 2008. 12. 29.>

제10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4. 3. 11., 2014. 6. 3., 2016. 12. 27., 2021. 8. 17.>

- 1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(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)
- 2.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
- 3.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・이용 및 보전(保全)・관리에 관한 사업
- 4.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
- 5.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
- 6.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,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, 「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
- 7. 농어촌의 환경보전 · 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
  - 가. 수질오염방지시설
  - 나. 하수도시설
  - 다. 오수 · 폐수처리시설
  - 라. 가축분뇨처리시설
- 8.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 · 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・연구・기술개발・조사・측량・환지・설계・공사감리, 시설물안전 진단 및 인력양성 · 교육에 관한 사업
- 10.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
- 11.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- 가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
  - 나.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
  - 다.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
  - 라.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・활용
  - 마. 농어업 ·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 · 연구사업

- 12.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
- 13.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- 가.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
  - 나,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
  - 다.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
  - 라.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(游漁基盤) 정비사업
- 14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5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
- 16.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(제10호는 제외한다)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2. 11.>
-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20, 2, 11.>

- 제11조(공사관리지역의 설정·관리)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 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12조(공사관리지역의 변경)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 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 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 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- 제13조(농업용수 이용자)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(이하 "농업용수 이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  - 1.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
  - 2.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·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(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을 가진 자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-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14조(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)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하다.
  -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 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  -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,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제15조(이용료의 체납처분)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 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"시장・군수"라 한다)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 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- 제16조(이의신청)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・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(裁決)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 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- 제17조(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)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 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 ·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- 제18조(농지매매사업 등)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 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1.>
  - 1.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(이하 "전업농 육성 대상자"라 한다) 및 농업법인에 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
  - 2.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
  -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·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, 12, 29,]

- 제19조(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)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1.>
  -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,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.
  -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(料率),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20조(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·매도사업)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.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・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·군수의 매매협의 조정 에 따라야 한다.

- 제21조(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)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 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(營農)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1.>
  -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

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 <개정 2020, 2, 11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[제목개정 2020. 2. 11.]

- 제22조(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・합병 등)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・ 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.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 6. 9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23조(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·제19조·제22조·제24조의2·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,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,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, 농지의 매입사 업,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,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 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 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  - 1.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
  - 2.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
  - 3.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 합병사업
  - 4.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·매도·임대사업
  - 5.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
  - 6.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
  -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·제19조·제22조·제24조의2 ·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 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,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 (補塡)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24조(농지 등의 재개발)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 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는 취득·소유하는 재산 중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한계농지, 간척지,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,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 여야 한다. <개정 2009. 6. 9., 2013. 3. 23.>
  - 1. 농지・초지(草地)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
  - 2.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
  - 3.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
  - 4. 농어촌 휴양지
  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
  -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제24조의2(농지의 매입·매도 등)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 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,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 다.
  -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 한다)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,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 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13., 2017. 12. 26.>

-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·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[전문개정 2008, 12, 29,]
- 제24조의3(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) ① 공사는 자연재해, 병충해,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 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(還買)를 요구할 수 있고,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·환매가격 및 지급방법, 임대기간·임대료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4조의4(농지 임대 등의 수탁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입대ㆍ사용대(使用貸)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대 ・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(受託)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,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(料率基準)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24조의5(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)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(이하 "농지연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 >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· 방법,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,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, 가 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, 7, 25., 2019, 12, 10.> [본조신설 2008. 12. 29.]
- 제24조의6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)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"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"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10.]

- 제24조의7(수급권의 보호)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  -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10.]

**제3절 재무** <개정 2008. 12. 29.>

- 제25조(자금조달)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(이하 이 절에서 "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  - 1. 자본금과 적립금
  - 2. 제26조에 따른 차입금
  - 3. 제27조에 따른 사채(社債)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
  - 4. 자산운용 수입금
  - 5. 그 밖의 수입금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26조(차입금)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(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)할 수

있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,]

- 제27조(사채의 발행)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-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
  -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28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.
  - 1.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
  - 2.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  - 3.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
  - 4. 국고 납입
  -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 로 이월한다.
  -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 입(轉入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29조(보조금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・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30조(공사의 회계 특례)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・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·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(이하 "적립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  -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 2. 11.>
  - 1.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 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
  - 2.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「농지개량조합법」에 따른 농지개 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(價額)에 해당되는 금액
  - 3.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
  -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  - 1.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 · 관리비용
  - 2.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
  -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. <개정 2010. 5. 17., 2013. 3. 23.>
  -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 예치
  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. 다만, 주권,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.
  - 3.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
  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
  -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## 제3장 농지관리기금 <개정 2008. 12. 29.>

제31조(농지관리기금의 설치)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, 농지의 집단화,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·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3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9. 6. 9., 2018. 3. 20.>

- 1. 정부출연금
- 2. 제33조에 따른 차입금
- 3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預受金)
- 4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
- 5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- 6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,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
- 7. 기금운용수익금
- 8.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
- 9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(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 함하다)

[전문개정 2008, 12, 29,]

제33조(자금의 차입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,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3.>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34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1, 7, 25., 2019, 8, 27.>

- 1.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
- 2.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
- 3.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·합병사업과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가 시행·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·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
- 5.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
- 5의2.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,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
  - 가.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
  - 나.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, 양수장,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
- 6.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
- 7.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
- 8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
- 9.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
- 9의2. 대단위농업개발사업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는 것을 말한다)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
- 10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
- 11.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, 융자 및 투자
- 12.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13.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 며,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(缺損金)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(損費)처리할 수 있다.
-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1. 다른 기금으로 예탁
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
- 3. 금융기관에 예치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**제3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 탁할 수 있다. 다만,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5. 17., 2011. 3. 31., 2013. 3. 23.>
  - ③ 기금은 「국가회계법」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36조** 삭제 <2005. 12. 29.>

제37조(기금의 회계기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

할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,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 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 담 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 행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38조(윰자금의 회수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화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- 제39조(기금의 결산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 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제4장 보칙 및 벌칙 <개정 2008. 12. 29.>

- 제40조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의 관계) 공사의 조직 및 유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- 제41조(등기촉탁의 대위)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 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「부동산등기법」 제98조에 따라 등기 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(代位)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6. 12. 27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42조(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** 공사가 제18조·제19조·제24조·제24조의2·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「농지법」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43조** 삭제 <2002. 12. 26.>

제44조(조성토지의 처분 특례) 국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(讓與)할 수 있다. <개 정 2009. 6. 9., 2020. 2. 11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45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 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

- 제46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)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08. 12. 29.]
- 제47조(자료제공 등의 요청)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  -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과세정보(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8. 17.>

- 1. 납세자의 인적사항
- 2. 사용목적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 다. <신설 2021. 8. 17.>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 <신설 2021. 8. 17.>

- 제48조(관계 서류의 열람 등)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 류의 열람·복사 또는 등·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 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- 제49조(감독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2. 27.>
  - 1.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
  - 2.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
  - 3.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**제50조** 삭제 <2009. 5. 27.>

- 제50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제50조의3(비밀누설금지 등)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, 12, 29.]

- 제51조(벌칙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[전문개정 2008. 12. 29.]

- 제52조(과태료)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3. 3. 23.>